



본인부담환급금 지급동의계좌
신규·변경·해지 신청서

소통과 배려로
국민과 함께
하겠습니다.

진료받은 분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현주소		휴대폰번호	
			자택 전화번호	
신청 내역	신청인		주민등록번호	
	신청내역	[]신규 []변경 []해지	진료받은 분과 관계	
	신청인	주소	자택 전화번호	휴대폰번호
	금융기관명		계좌번호	
	예금주명		예금주 주민번호	
변경·해지사유				
안내사항	1. 진료받은 분 본인계좌만 신청 가능하며, 배우자·직계존비속의 계좌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2. 앞으로 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동의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. (계좌 변경·해지사유 발생 시 반드시 공단에 신고) 3. 지급동의계좌로 신청을 하면 별도의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이 되지 않으며, 신청한 지급동의계좌로 먼저 입금 후 지급결과를 전자문서(네이버 등)로 발송하며, 미수신시 우편으로 안내합니다. 4. 지급동의계좌를 변경 또는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 5. 차상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환급금 발생 시에도 위 계좌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.			

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7조(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) 제3항 및 제57조(부당이득의 징수) 제5항
2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8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-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청인 성명, 진료받은 분 성명, 진료받은 분과의 관계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주소, 체납보험료, 계좌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
- 보유 및 이용기간: 10년

위와 같이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동의계좌를 신규·변경·해지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접수자: (서명 또는 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

담당자	1. 진료받은 분의 성명·주소	확인 []	미확인 []
확인사항	2. 진료받은 분의 주민등록번호	확인 []	미확인 []
	3. 진료받은 분의 휴대폰 또는 자택 전화번호	확인 []	미확인 []
	4. 진료받은 분과 신청인의 관계(배우자, 직계존비속 여부)	확인 []	미확인 []